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64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김용민·박은정·박성준  
박지원·최혁진·김영호  
서영교·부승찬·김승원  
황운하·한창민·박민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청에 대응한”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2條(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공소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7조의 제목 “(法定期間의 연장)”을 “(법정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の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을 “교통통신”으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

제71조의2 전단 중 “경찰서”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의 조건을 정하여 피고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에는 제98조부터 제100조의2까지, 제102조부터 제104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81조의 제목 “(拘束令狀의 執行)”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3조 및 제8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15조의 제목 “(令狀의 執行)”을 “(영장의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영장의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 제123조의3 및 제1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영장집행과 의견 진술) 피고인, 변호인 및 제123조 각 항에 규정된 사람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3조의3(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압수·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제123조의2에 규정된 사람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 및 그 방법 등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23조의2에 따라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의견을 진술한 때

2.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 때

3.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때

제1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으로,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을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으로 한다.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제151조제4항 중 “경찰서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한다.

제195조의 제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을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사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그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수행과 관련하여 검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검사와 공소청 직원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⑥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6조의 제목 “(검사의 수사)”를 “(수사인권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사과정(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둔다. 다만,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에 대하여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민원이 이유 있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또는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권고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수사인권보호관의 자격,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을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지체없이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④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7조의3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권한 있는 사람”을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으로, “징계를”을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로,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검사에게”를 “제196조에 따른 수사인권보호관에게”로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7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둔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①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이첩하여야 한다.

제198조제2항 중 “검사·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취득한”을 “알게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출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⑦ 각급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1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점검)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が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으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를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로, “檢事は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관할 地方法院判事の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를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로, “第200條의 規定”을 “제200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00조의3의 제목 “(緊急逮捕)”를 “(긴급체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으로, “地方法院判事の 逮捕令狀”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으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를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 “긴급”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逮捕令狀을 받을 時間的”을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을 “검사는  
석방한 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석방한 검사 또는”을 “석방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00조의5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0조의6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을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  
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을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으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보며, 제81조제1항 본문 중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제201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5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1조(구속 및 조건부 석방)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2. 그 밖에 피의자의 재범 또는 증거인멸 방지,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 등 보호를 위하여 지방법원판사가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⑥ 검사는 제5항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가 그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는 검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에는 제98조부터 제100조의2까지, 제10

2조부터 제104조의2까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에 관한 권한은 공소제기 전에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행사한다.

⑧ 검사는 제5항에 따라 조건부 석방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⑨ 검사 또는 피의자는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의 석방조건이 부적절함을 이유로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석방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뿐 석방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⑩ 구속적부심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9항의 항고는 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⑪ 제9항에 따른 항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⑫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1조의3(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의 고지 및 송부) ①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결정서를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도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서에는 구속 여부 판단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공범 수사, 피해자 보호 또는 수사의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 이유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열람을 제한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2조 및 제20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를 제203조의3으로 하고, 제20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구속기간과 그 연장)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이외의 범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이하 “공수처 검사”라 한다)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범죄로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공수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항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03조의3(종전의 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3조의3(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제203조 또는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197조의2의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3의 시정조치요구·제245조의8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계속해야 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 ①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제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본문 중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제210조를 삭제한다.

제2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 ①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13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받”을 “규정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으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214조의2제2항 중 “구속한 검사 또는”을 “구속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2조·제203조”를 “제202조·제203조·제203조의2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2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5조의2 및 제2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5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심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5조의3(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기재사항) 검사가 제215

조에 따른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그 압수·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6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제2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의2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가”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을 “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18조부터 제123조까지, 제123조의2, 제123조의3, 제124조부터 제130조까지, 제130조의2, 제131조, 제132조,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115조제1항 본문의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제486조의 “검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제221조제1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수 있다”를 “수 있으며, 그의 동의를 받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녹음 또는 영상녹화에 대한 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제221조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협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1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명 이내의 외부”를 “11명 이내의”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를 “광역공소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중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1. 관할 구역 광역공소청장이 추천하는 1명
  2.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천하는 1명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추천하는 1명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추천하는 1명
  5.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1명
  7.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하는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4명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각 광역공소청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 심의의견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⑦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2조(변사자의 검사)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이 검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변사자의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제2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8조(고소권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 및 제2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기변호를 위하여 진술 내용, 조사 경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메모할 수 있다.

제2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있고, 검사 또는”을 “있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제244조의2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조사의 개시”를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될 수 있도록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최초의 진술”로, “영상녹화하여야”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로 한다.

피의자의 진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녹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5조의3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의”를 “사법경찰관의”로,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를 “수사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245조의4 중 “검사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한다.

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5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5조의9를 삭제한다.

제245조의10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를 “증거를 수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제197조의2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수사에 준용한다.

제246조의2부터 제24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6조의3(공소심의회의 설치) 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후보예정자의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0명 이내 심의위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후보예정자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 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심의위원후보예정자 및 예비 심의위원을 포함한다)의 자격 요건, 제외 사유 및 무작위 추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4(심의의 신청 및 시기) 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
2.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사건에 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 범죄 사건
3. 조직폭력, 마약, 살인 등 중요 강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
4.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
5.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6. 기타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남용 신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써 이를 즉시 각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246조의6제1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제246조의5(심의절차 등) ①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에게 관련 수사기록 및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외에 신청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심의회의 독립적인 심리와 법률 자문을 보조하기 위하여 검사의 직에 있지 아니한 변호사 중에서 심사보조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6조의6(의결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9명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가 의결로써 검사의 처분과 다르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처분과 다른 결정이 있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공소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지정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변호사는 심의회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변호사의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지정변호사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하여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지정변호사의 보수, 경비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7(재정신청과의 관계 등) ① 심의회의 심의 신청, 심의 및 의결은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 절차는 중지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심의회의 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은 제24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 「공소청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거나 심의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제246조의4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2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그 관할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①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8조의2(피의자의 재정신청) ① 제25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피의자는 그 검사가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 결정의 취소를 기각하는 제2항의 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

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을 “고소 또는”으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을 “자는”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을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를 “「공소청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을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61조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등법원과”를 “지방법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 한다.

제2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를 “제294조제1항 및 제295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소제기를”을 “공소제기 또는 재수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결정을”을 “재수사 결정을”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결정에”를 “재수사 결정에”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

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를 “관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법원은 재정신청사건의 신청권자가 관련 서류와 증거물 및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2조의3제3항 중 “제1항”을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으로,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을 “제2항이 정한 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재정신청인에게 명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재정신청인이 제3항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3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62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264조의2의 제목 “(공소취소의 제한)”을 “(공소제기의 의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제2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4조3(공소유지담당변호사)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각 지방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사건기록을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본다.

④ 법원은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 경비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6조의16제2항 중 “피고인”을 “법원은 피고인”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2조의 제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을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을 “사법경찰관 앞”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27조제2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2호) 중 “공소제기의”를 “기타 공소제기의”로 한다.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3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7조(형의 소멸과 재판)

- ①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6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하며,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の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을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417조(동전)

제4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

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제4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4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제47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검사가 전항의 지휘”로 하고,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

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77조제5항 전단 중 “조사”를 “조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 · 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 ·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u>검찰청</u>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u>검찰청</u>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p> <p>⑦ (생략)</p> <p>第62條(檢事에 對한 送達) 檢事에 對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察廳에 送付하여야 한다.</p> <p>第67條(法定期間의 연장)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와의 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라</p>	<p>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 · 등사) ①----- ----- ----- ----- <u>공소청</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u>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u> -----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62조條(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공소청에 송부하여야 한다.</p> <p>第67條(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u>공소청 소재지</u>----- -- <u>교통통신</u>-----</p>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第73條(令狀의 發付) (생략)

<신설>

<신설>

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대법원규칙-----  
----.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  
-----  
-----  
----- 경찰서 등 수사기관 -  
-----.  
-----.

第73條(令狀의 發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법원은 피고인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의 조건을 정하여 피고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에는 제98조부터 제100조의2까지, 제102조부터 제104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第81條(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檢事의 촉탁에 依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急速을 요하는 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②·③ (생략)

第83條(管轄區域 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 ①檢事は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할 수 있다.

②司法警察官吏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을 執行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司法警察官吏에게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第84條(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查囑託)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高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搜查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第115條(令狀의 執行) ①押收·搜索令狀은 檢事の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第115條(영장의 집행) ①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 법원  
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② (생략)

第122條(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  
의 通知) (생략)

<신설>

<신설>

<신설>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第122條(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  
의 通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21조에 규  
정된 사람에게 영장의 집행일시  
와 장소를 통지하고 집행에 참  
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영장집행과 의견 진  
술) 피고인, 변호인 및 제123조  
각 항에 규정된 사람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3조의3(전자정보의 압수·수  
색) 압수·수색할 물건이 컴퓨  
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  
인 경우에는 제123조의2에 규정  
된 사람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 및 그 방법 등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第137條(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

第138條(準用規定)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

제130조의2(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23조의2에 따라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의견을 진술한 때
2.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 때
3.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때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

法警察官吏, 법원사무관등의 搜索에 準用한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략)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 ~ ⑧ (생략)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95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수사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그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수행과 관련하여 검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검사와 공소청 직원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⑥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6조(수사인권보호관) ① 수사과정(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둔다. 다만,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에 대하여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민원이 이유 있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또는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권고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수사인권보호관의 자격,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  
-----  
-----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

1. 2. (생략)

② (생략)

<신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⑤ (생략)

이 경우 검사는 지체없이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④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

⑥ -----  
-----  
----- . 이 경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각급 공소청의 장-----  
-----  
-----  
-----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  
----- 있다.

⑧ -----  
-----  
-----  
----- 제196조에 따른 수사인권보호관에게 -----  
----- .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신 설>

제198조(준수사항) ① (생략)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둔다. 수사권관할조정협회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①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이첩하여야 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



<신 설>

第198條의2(檢事の 逮捕・拘束場所監察) ①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 하여금 每月 1회 以上 管下搜查官署의 被疑者의 逮捕・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여야 한다. 監察하는 檢事は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審問하고 關聯書類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檢事は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逮捕 또는 拘束된 것이라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즉시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

조사 및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⑦ 각급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第198條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점검)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正當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管轄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の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一定的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正當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 ⑤ (생략)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  
-----  
-----.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罪를 범하였다고 의심-----  
----- 제200조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  
----- 사법경찰관은 檢事에게 신청하여 檢사의 請求로 管轄 地方法院判事の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  
-----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一定的한 住居-----  
----- 제200조의 規定-----  
-----.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200條의3(緊急逮捕)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 · 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 判事의 逮捕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令狀을 받을 時間的 余裕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2. (생략)

②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緊急逮捕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④ (생략)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

第200條의3(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

-----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 영  
장없이 피의자를 체포-----

---. ----- 긴급-----  
피의자-----

-----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

1. 2.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  
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  
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



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200條의6(準用規定) 제75조,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拘束”은 이를 “逮捕”로, “拘束令狀”은 이를 “逮捕令狀”으로 본다.

⑥ -----  
-----  
-----  
----- 통보 -----  
--.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사법경찰관-----  
-----  
-----  
-----  
--.

第200條의6(준용규정) -----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  
-----  
-----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  
-----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보며, 제81조제1항 본문 중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第201條(拘束) ①被疑者が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は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を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の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を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 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が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② ~ ④ (생략)

⑤檢事が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그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 있을 때에는 다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201條(구속 및 조건부 석방)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제 70조제1항 各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청구로 管轄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多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關하여는 피의자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請求를 받은 地방법원판사는 제98조 各 호 또는 다음 各 호의 條件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제4항 前段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各 호 또는 다음 各 호의 條件 중 하나 이상의 條件을 定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신 설>

<신 설>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2. 그 밖에 피의자의 재범 또는  
증거인멸 방지,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 등 보호를 위하  
여 지방법원판사가 정하는 적  
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⑥ 검사는 제5항에 따라 조건부  
로 석방된 피의자가 그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나 그 밖  
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  
나 그 밖의 공사단체는 검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에  
는 제98조부터 제100조의2까지,  
제102조부터 제104조의2까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  
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에 관한  
권한은 공소제기 전에는 지방법  
원판사가, 공소제기 후에는 수  
소법원이 행사한다.

<p>&lt;신 설&gt;</p>	<p>⑧검사는 제5항에 따라 조건부 석방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p>
<p>&lt;신 설&gt;</p>	<p>⑨검사 또는 피의자는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의 석방조건이 부적절함을 이유로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석방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뿐 석방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p>
<p>&lt;신 설&gt;</p>	<p>⑩구속적부심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9항의 항고는 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p>
<p>&lt;신 설&gt;</p>	<p>⑪제9항에 따른 항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p>
<p>&lt;신 설&gt;</p>	<p>⑫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⑥ (생략)</p>	<p>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⑥ (현행과 같</p>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 ⑩ (생략)

<신설>

음)

⑦-----  
-----  
-----  
----- 공소청  
-----  
-----  
-----  
-----.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201조의3(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의 고지 및 송부) ①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결정서를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도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서에는 구속 여부 판단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공범 수사, 피해자 보호 또는 수사의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第202條(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때에는 10日 以內에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第203條(檢事の 拘束期間) 檢事が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の 引致를 받은 때에는 10日 以內에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신 설>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 이유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열람을 제한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검사의 구속기간과 그 연장)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이외의 범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이하 “공수처 검사”라 한다)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第203條의2(拘束其間에의 算入)

被疑者가 第200條의2·第200條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引된 경우에는 第202條 또는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引한 날부터 起算한다.

第205條(拘束期間의 延長) ①地方

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搜查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

② 公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범죄로 公수처 檢사가 피의자를 拘속한 때에는 7일 이내에 公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公수처 檢사의 申請에 의하여 수사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7일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제2항의 拘속기간의 延長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03조의3(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規定에 의하여 체포 또는 拘인된 경우에는 제202조·제203조 또는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拘인한 날부터 起산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延長) ①지방

법원판사는 檢사의 申請에 의하여 제197조의2의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3의 시정조치요구·제245조의8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繼續



第210條(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域 外의 搜查) 司法警察官吏가 管轄區域 外에서 搜查하거나 管轄區域 外의 司法警察官吏의 囑託을 받아 搜查할 때에는 管轄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 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 200條의3, 第212條, 第214條, 第 216條와 第217條의 規定에 依한 搜查를 하는 境遇에 緊急을 要 할 때에는 事後에 報告할 수 있 다.

第213條(逮捕된 現行犯人の 引渡)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가 現行犯人を 逮捕한 때에는 即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 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 (생략)

第213條의2(準用規定) 제87조, 제 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인 을 逮捕하거나 現行犯인을 引渡 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 찰관리'로 본다.

<삭 제>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 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 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 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3조의2(준용규정) -----  
-----  
----- 규정은 사법경 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 나 현행범인을 인도받-----  
----- 준용한다.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생략)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 ⑫ (생략)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생략)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속한 -----  
-----  
-----  
-----  
-----  
-----  
-----.

③ ~ ⑫ (현행과 같음)

⑬-----  
-----  
공소청-----  
-----  
-----  
-----  
-----  
----- 제202조·제203조·제203조의2 제1항과 제2항 -----  
-----.

⑭ (현행과 같음)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삭제>

제215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심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5조의3(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기재사항) 검사가 제21

第216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強制處分)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서의 被疑者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5조에 따른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그 압수·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  
-----  
-----  
-----  
-----.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②前項 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令狀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③ (생략)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  
-----  
-----  
-----  
-----  
-----  
-----  
-----  
-----.

②사법경찰관-----  
-----  
-----  
----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  
-----.

③사법경찰관-----  
-----

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第218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 檢事, 司法警察官은 被疑者 其他人の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

-----  
-----  
--.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 -----  
-----  
-----  
-----  
-----  
-----  
-----.

② ----- 사법경찰관이 -----  
----- 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  
-----.

③ -----  
-----

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第219條(準用規定)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項, 第118조부터 第132조까지, 第134조, 第135조, 第140條, 第1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 但,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處分을 함에는 檢事の 指揮를 받아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  
-----.

<삭 제>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18조부터 제123조까지, 제123조의2, 제123조의3, 제124조부터 제130조까지, 제130조의2, 제131조, 제132조,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115조제1항 본문의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제486조의 “검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  
 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  
 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범죄의 搜查에 없어서는 아니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  
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  
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사법경찰관-----  
 -----  
 -----  
 --- 수 있으며, 그의 동의를 받  
 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수 있  
 다. 다만, 녹음 또는 영상녹화에  
 대한 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  
 다.

②사법경찰관-----  
 -----  
 -----.

③-----  
 ----- 사법경찰관-----  
 -----  
 -----.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협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  
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⑥ 判事는 제1항의 請求에 依한 證人 訊問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請求) ①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사법경찰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  
-----  
-----  
----- 지  
방공소청 ----- 광  
역공소청-----  
-----  
② -----  
----- 광역공소청-----

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 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③ -----  
----- 11명 이내의 -----  
----- 광역  
공소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

1. 관할 구역 광역공소청장이  
추천하는 1명

2.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천하  
는 1명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추  
천하는 1명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추천하는 1명

5.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  
는 1명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  
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1명

7.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  
장이 추천하는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  
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  
지지 아니한 사람 4명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④ (생략)

<신설>

<신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 檢事가 檢視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檢事は 司法警察官에게 前2

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각 광역공소청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 심의의견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⑦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⑧ ----- 대통령령-----.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第228條(告訴權者의 指定) 親告罪에 對하여 告訴할 者가 없는 境遇에 利害關係人의 申請이 있으면 檢事는 10日 以內에 告訴할 수 있는 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第237條(告訴, 告發의 方式) ①告訴 또는 告發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238條(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司法警察官이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迅速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241條(被疑者訊問)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

변사자의 檢시를 한 경우 그 結果를 檢사에게 지체없이 通報하고 수사할 사항 등에 關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제228조(고소권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에는 먼저 그 姓名, 年齡, 등록 기준지, 住居와 職業을 물어 被疑者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야 한다.

第242條(被疑者訊問事項)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 하며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신 설>

第243條(被疑者訊問과 參與者) 檢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查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기변호를 위하여 진술 내용, 조사 경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메모할 수 있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사법경찰관  
-----  
-----  
-----  
-----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생략)

-----  
-----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③ -----  
-----  
-----  
-----.  
--- 사법경찰관-----  
-----.

④ -----  
-----.  
-----  
-----  
-- 있고, -----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 4. (생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

⑥ 사법경찰관-----  
-----  
-----  
-----.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녹음·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녹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하여야 한다. -----  
-----

-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될 수 있도록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최초의 진술-----  
-----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사법경찰관-----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  
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第245條(參考人과의 對質)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  
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  
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  
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  
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  
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  
-----  
-----  
-----  
-----.

1.·2. (현행과 같음)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사법경  
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  
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경찰관은 -----  
-----  
-----  
-----  
-----.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 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생략)

<신 설>

-----.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  
-----  
----- 사법경찰관은 -----

② 사법경찰관은 -----  
-----.

③ ----- 사법경찰관의 -----  
----- 수사관서의 장에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5조의4(준용규정) -----  
----- 사법경찰관의-----.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  
----사람은-----  
-----  
-----.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  
-----  
-----  
-----  
-----  
-----  
----. 이 경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제197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  
-----  
-----  
-----  
-----

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  
-----  
.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

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  
-----  
----- .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  
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  
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  
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  
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생략)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  
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  
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  
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  
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  
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  
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  
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  
----- 증거를 수사한  
다.

④ 제197조의2부터 제245조의8  
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  
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수사에  
준용한다.

<삭 제>

계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삭 제>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6조의3(공소심의회의 설치)

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후보예정자의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100명 이내 심의위원 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후보예정자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 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심의위원후보예정자 및 예비 심의위원을 포함한다)의 자격 요건, 제외 사유 및 무작위 추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6조의4(심의의 신청 및 시기)

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

2.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사건에 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 부패 사건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 범죄 사건

3. 조직폭력, 마약, 살인 등 중요 강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

4.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

5.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6. 기타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남용 신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써 이를 즉시 각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246조의6제1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신 설>

제246조의5(심의절차 등) ①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에게 관련 수사기록 및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외에 신청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심의회 독립적인 심리와 법률 자문을 보조하기 위하여 검사의 직에 있지 아니한 변호사 중에서 심사보조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6조의6(의결 등) ① 심의회 회의는 심의위원 9명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가 의결로써 검사의 처분과 다르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처분과 다른 결정이 있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공소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지정 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변호사는 심의회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변호사의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지정변호사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지정변호사의 보수, 경비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6조의7(재정신청과의 관계 등) ① 심의회의 심의 신청, 심의 및 의결은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 절차는 중지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심의회의 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은 제24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 「공소청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거나 심의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제246조의4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第256條(他管送致) 檢事は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第257條(告訴等に 依한 事件의 處理) 檢事が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查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 날로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그 관할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

부터 3月 以內에 搜查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8조의2(피의자의 재정신청)

① 제25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피의자는 그 검사가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 결정의 취소를 기각하는 제2항의 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 또는  
-----  
-----  
----- 자 -----  
-----  
-----  
-----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생략)

----- 지방공소청 -----

-----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

----- . <단서 삭제>

②-----

---- 「공소청법」 제57조-----

1. ~ 3. (현행과 같음)

③-----

----- 30일 이  
내에 지방공소청장 -----

④ (현행과 같음)



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생략)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④ (생략)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보를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 이 경우 제294조제1항 및 제295조를 준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공소제기 또는 재수사를-----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지방공소청장 -----  
----- . -----  
-- 재수사 결정----- 지방공소청장 -----  
-----  
-- .

⑥----- 재수사 결정에 -  
----- 지방공소청장 -----  
-----  
----- 관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 . 이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재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수사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법원은 재정신청사건의 신청권자가 관련 서류와 증거물 및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2항이 정한 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재정신청인에게 명할-----.

④ 법원은 재정신청인이 제3항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④ (생략)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생략)

②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수 있고, 제3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264조의2(공소제기의 의제 등)

①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 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제264조의3(공소유지담당변호사)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각 지방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사건기록을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해당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금지) ① (생략)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본다.

④ 법원은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 경비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삭 제>

③수사기관-----  
-----  
-----  
-----  
-----  
-----  
-----

④사법경찰관이 -----  
-----  
-----  
-----  
-----  
-----  
-----  
-----  
-----  
-----  
-----  
-----  
-----  
-----  
-----

-- 사법경찰관 앞-----  
-----  
-----  
-----  
-----  
-----  
-----  
-----  
-----  
-----  
-----



3. ~ 6. (생략)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第337條(刑의 消滅의 裁判) ① 「형법」 第81條 또는 同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 그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 있는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第361條의2(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 · ② (생략)

③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경우에는 原審法院에 對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移送하여야 한다.

第417條(同前)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第243조

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8. 기타 공소제기의-----  
-----  
-----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361條의2(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對하여 不服이 있  
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  
한 法院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第428條(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停  
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管轄法  
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는 再審  
請求에 對한 裁判이 있을 때까  
지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第460條(執行指揮) ①裁判의 執行  
은 그 裁判을 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が 指揮한다. 但, 裁  
判의 性質上 法院 또는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上訴의 裁判 또는 上訴의 取  
下로 因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 上訴法院에 對  
應한 檢察廳檢事が 指揮한다.  
但, 訴訟記錄이 下級法院 또는  
그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에 있  
는 때에는 그 檢察廳檢事が 指

-----  
----- 大하여 불복이 있으  
면 管轄법원-----  
-----  
-----  
-----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  
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  
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  
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  
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  
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  
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  
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의 관  
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가 지휘  
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

揮한다.

第467條(死刑執行의 參與) ①死刑의 執行에는 檢事와 檢察廳書記官과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가 參與하여야 한다.

② (생략)

第468條(死刑執行調書)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第470條(自由刑執行의 停止) ①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礙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礙가 回復될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한다.

②·③ (생략)

第471條(同前) ①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

청검사가 지휘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함에는 소속 高等檢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公소청검사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公소청검사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집행을 停止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검사가 전항의 指揮-----  
---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  
-----.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  
-----  
----- 지방공소청-----  
-----  
-----.

② -----  
-----  
-----  
-----  
지방공소청장-----  
-----.

<p>③ (생 략) 第477條(財産刑 等の 執行) ① ~</p> <p>④ (생 략)</p> <p>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u>조사</u>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u>준용</u>한다.</p> <p>⑥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 第477條(財産刑 等の 執行) ①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조치</u>----- ----- -- <u>준용</u>하되, “<u>수사</u>”는 “<u>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u>”로 본다.</p> <p>⑥ (현행과 같음)</p>
--	--